공화국사회주의법은 정치생활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

김명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녀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김일성전집》제4권 64폐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의 진보와 발 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다. 다시말하여 인권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근로대중이 행사하여야할 자주적권리이다.

녀성들에게 있어서 인권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꼭같이 가지는 평등한 자주적권리이다. 녀성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는것은 결국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성들과 평등한 자주적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녀성인권보장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생활의 기본분야인 정치생활에서 녀성들에게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평등하게 전면적으로 보장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는 정치생활이다. 녀성들의 인 권, 자주적권리는 무엇보다 정치생활령역에서부터 실현되여야 하며 녀성들의 정치적권리 와 자유를 실현하는것을 떠나서 그들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녀성권리보장문제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시고 력사적인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세기를 두고 무지와 몽매속에 허덕이며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우리 나라 녀성들을 사회의 떳떳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녀성인 권보장의 법적제도를 확립하여주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 녀성들의 인권, 자주적인 권리실현을 보장할수 있는 법률적기초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남녀평등권법령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헌법과 선거법, 지방주권기관법, 신소청원법, 저작권법, 로동법, 교육법, 민법, 가족법, 상속법 등 공화국의 모든 부문법들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자주적권리와 그 실현을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함으로써 녀성인권보장의 법률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 법》을 비롯한 공화국사회주의법은 녀성들의 자주적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회주의국가의 기 본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의 사회생활전반에서 참다운 자주적권리를 떳떳이 행사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담보하는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이다.

공화국사회주의법은 정치생활에서 녀성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 장하여주는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이다.

공화국사회주의법이 정치생활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 저 그것이 녀성들에게 국가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주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를 이루는 성원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일정한 정치조직에 의하여 부여된다. 정치조직에서 중요한것은 국가와 정당, 사회단체 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 들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국가와 정당, 사회단체와 같은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제정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것을 통하여 정 치적권리를 실현한다.

국가는 사회의 포괄적인 정치조직이며 정치적지배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국가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여야 사회적인간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 나갈수 있다.

공화국사회주의법은 우선 녀성들에게 주권기관선거에 참가할수 있는 평등한 권리와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진정한 대표들을 주권기관의 성원으로 선출하거나 또는 자기자신이 그 성원으로 선출되여 국가주권의 실 현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해방후 발포된 남녀평등권법령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선거권을 법화하였으며 사회주의헌법 제66조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제2조에서는 17살이 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 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12조에서 녀성들의 평등한 선거권을 다시금 뚜렷이 법화하였다.

이와 같이 공화국사회주의법에 규제된 녀성들의 평등한 선거권리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녀성들의 주권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공화국사회주의법은 또한 녀성들에게 국가기관에서 사업할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보 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녀성들에게 정치적권리가 원만히 보장되고있는것은 그들에게 국가기 관에서 사업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있는데서도 집중적으로 찾아볼수 있다.

너성권리보장법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공화국에서 모든 너성들이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법화하고 너성일군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너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하는것을 국가기관들의 법적의무로 규제하고있다. 특히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너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오래전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녀성들의 역할을 통찰하시고 녀성간부들을 많이 키워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당 및 정권기관, 근로 단체, 행정경제기관 등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녀성들을 대담하게 간부로 등용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수많은 녀성간부들이 자라나 당과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며 빛나는 위훈들을 아로새기고있는 현실은 녀성들의 정치적권리가 참답게 실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사회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사회주의법은 또한 너성들에게 평등한 신소청원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69조에서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으며 공화국신소청원법 제8조에서는 공민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이것은 성별에 관계없는 공화국공민의 평등한 신소청원의 권리를 선언한것이다.

공화국녀성권리보장법에서는 녀성들에 대한 차별없는 평등한 신소청원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하여 규제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17조에서는 녀성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규제하면서 녀성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는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적의무로 밝히였으며 특히는 녀성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는데 대하여 엄격한 금지규범을 설정함으로써 녀성들의 신소청원의 권리와 그 실현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녀성들은 신소청원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국가기관들의 사업을 개선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잡으며 그들이 맡겨진 임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나갈수 있게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녀성들에게 부여된 평등한 신소청원의 권리는 명실공히 녀성들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활동에 반영할수 있게 하며 일상적으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담보한다.

공화국사회주의법은 또한 녀성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국가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사회정치생활을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녀성들에게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같이 평등한 사회적존재로 태여날뿐아니라 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 활동한다. 그 어떤 특권을 가지고 태여난 사람은 없다. 물론 사회적분담에 의하여 차례지 는 권한과 그에 따른 사회적활동범위는 다를수 있으나 사회활동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수 없다.

공화국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서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제하고있 다. 이것은 녀성들을 포함한 모든 공화국공민들에게 부여되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 사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선언으로서 성별에 의한 정치적권리에서의 차별을 배제하고 녀 성들에게 평등한 사회정치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위력한 법률적담보이다.

공화국녀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국가사회생활과 관련된 건설적인 의견을 직접 말로써 제기하거나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통하여 마음대로 발표할수 있으며 국가로 부터 출판보도활동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보장받는것과 같은 형식을 통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리고 여러가지 회의나 모임을 조직하고 거기에서 창발적인 의견들을 자유롭게 제기할수 있으며 당의 령도밑에 과학, 기술, 문화분야에서 단체들을 조직하고 거기에 망라되여 활동하는것과 같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녀성이라고 하여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제한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는다.

공화국사회주의법이 정치생활에서 녀성인권보장의 위력한 무기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녀성들이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값높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주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의 모든 녀성들에게는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값있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활짝 열려져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녀성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회성원들에게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그의 한 성원으로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는 정치조직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이 조선로동당의 한 성원으로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으며 각계각층의 녀성들을 망라할수 있는 대중정치조직들이 조직 되여 녀성들의 정치조직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고있다.

녀성권리보장법 제7조에서는 녀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녀성동맹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우리의 녀성들은 사회정치조직들에 망라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간다.

혁명적당이 있고 당의 령도를 받는 혁명적정치조직들이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녀성들이 정치적조 직생활을 진행할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수 있게 하는 결정적조건이다.

이처럼 정치생활령역에서부터 녀성들의 인권문제가 빛나게 실현된 우리 공화국에서 녀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며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 지하고있으며 자주적인간으로서의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고있다.

우리는 녀성들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제도의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이 땅우에 사회 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